

## 사회복지법인 송원 이사회 회의록

- 1) 회의 통보일자 : 2021년 8월 23일
- 2) 회의 개최일시 : 2021년 9월 01일 11:00
- 3) 회의 개최장소 : 다자간영상통화
- 4) 회의 참석인원 : 대표이사 이성근

이사 하윤석, 장회원, 남정숙, 정응석

- 5) 안건 : 정관 변경에 대한 재심의 건

### ==== 토의 내용 ====

대표이사 : (인사말생략) 이사 7분의 5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하고 토의에 들어가다.

#### ▶ 안건 : 정관 변경에 대한 재심의 건

대표이사 이성근 : (안건상정에 이어 의안 설명에 들어가다)

2021년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중 주무관청에서 정관을 검토 중에 2021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정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관 변경 요청이 있어 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 하윤석 : 변경될 정관내용은 무엇입니까?

대표이사 이성근 :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노숙인복지시설 중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정신요양시설운영
3. 노인복지법제34조의 노인의료복 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운영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5.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숙인 급식시설 운영
6.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여가시설 운영
7. 노숙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매도.증여·교환·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포기, 의무부담등의 처분을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체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복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인터넷을 통해서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정수의 1/3(소수점이하는버림) 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감사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중에 선임한다. 다만,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실을 포함한다.)의 직전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7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시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종류를 정관변경인가를 득한 후 수행한

**제41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구정의 제 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 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① (시행일) 이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설립 이후에는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의 수정, 삭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정은석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정관을 점검하여 변경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 검토하고 변경될 사항은 변경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정관변경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사 하윤석 : 2021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배부한 자료의 내용대로 정관을 변경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사 장회원 : 정관변경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사 남정숙 : 네 저도 장회원 이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사 하윤석 : 남정숙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본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안통과를 선언하고, 폐회를 구하다.

이    사 일    동 : 이에 동의하다

대    표    이    사 : 참석이사 전원 이사회회의록에 기명날인하다.

2021. 09. 01. 11:30

대표이사

이성근



이    사

김은서



하    윤    석



남정숙  
26 9/1

